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680

발의연월일: 2020. 9. 9.

발 의 자:윤영석·권성동·이종배

구자근 · 임이자 · 강기윤

이태규 · 윤상현 · 김태호

최형두 · 이채익 · 홍준표

최승재 · 배현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권원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탁기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하고 있음.

그러나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추정 방법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기술탈취 발생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경제적, 잠재적 손해발생액 추정은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기관이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근거해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을 추정하게 할 수 있

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원은 위탁기업이 제2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을 추정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법원은 위탁기업이 제25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함으로써 제
	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
	는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
	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
	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
	을 추정하게 할 수 있다.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